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691
------------	------

2024. 04. 29.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4. 4. 3. 박승진 의원 발의 (2024. 4. 8. 회부)

## 2. 제안이유

- 그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통제기능이 필요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 위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위탁기간 조정이 필요하게 됨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 주요내용

-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안 제21조제2항)

##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 및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그 위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그간 서울시는 SH공사 및 주거복지 관련 법인·단체와 2년 단위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위탁(SH공사)과 민간위탁(주거복지 법인·단체) 계약을 각각 체결해왔는데,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가 “SH공사 혁신 추진계획”<sup>1)</sup>을 발표한 이래 2022년 4월부터는 SH공사와 대행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SH공사에 중앙센터 1개소 및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사무 전체를 위탁해오고 있음.
  - 현재, SH공사는 중앙센터 및 9개소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나머지 16개소의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와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제3자위탁)<sup>2)</sup>하여 운영 중에 있음.<sup>3)4)</sup>

1) 주택정책과-8499(2021.12.20.),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3호, “SH공사 혁신 추진계획”

2) 주택정책과-20945(2023.11.03.),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제3자 위탁 승인 요청에 대한 회신”

3)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외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됨.

위탁(공공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공공단체·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위탁은 수탁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고, 민간위탁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3.12), p.4, p.10)

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 최근 서울시는 SH공사와의 대행사무 위탁계약(2022.4.1.~2024.3.31)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2년간 대행사무 위탁계약을 재계약<sup>5)</sup>한 상태이며, 서울시 정책결정에 따라 SH공사와 주거복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위탁운영 용역계약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만 체결<sup>6)</sup>한 상태로, 2025년부터는 SH공사가 25개 전 자치구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직접 운영할 예정임.<sup>7)</sup>

**【중앙 주거복지센터】 - SH공사(인력: 상근 10명)**

- 역할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담, 긴급주거비 지원, 지역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상담·운영매뉴얼 제작, 지역센터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

**【지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25개소(1 자치구 1 지역센터)**

- 운영기관(SH공사)
  - **직접운영** : 9개소 (센터별 인력: 5명 내외)
    - ※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양천, 서초, 강동
  - **제3자위탁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16개소 (센터별 인력 : 8명 내외)
    - ※ 제3자위탁 운영 법인 현황(위탁기간 : '24.1.1. ~ '24.12.31.)

연번	지역명	법인명	연번	지역명	법인명
1	강남	(사)해냄복지회	9	동작	(사)주거복지연대
2	강북	(사)강북주거복지센터	10	마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3	강서	(사)함께하는나눔과이음	11	서대문	(사)마을과사람
4	관악	(사)관악주민연대	12	성북	(사)나눔과미래
5	광진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3	송파	(사)위례
6	구로	(사)나눔은희망과행복	14	영등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7	금천	(사)한국주거복지협회	15	은평	(사)마을과사람
8	노원	(사)나는청소년	16	종로	(사)나눔과미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5) 주택정책과-19219(2023.10.12.), “2024년 주거복지센터 사무 추진 방안 알림”  
주택정책과-23651(2023.12.11.), “주거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 재계약 추진계획”
- 6)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3865(2023.11.29.), “24년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시 주거복지상담 및 지원사업 위탁운영 발주계획(안)”
- 7) 주택정책과-2140(2024.1.31.), “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계획”  
주택정책과-2249(2024.2.1.), “24년 주거안심종합센터 운영계획 알림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8)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간(3년 이내)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행 조례 제21조제2항9)의 위탁기간(2년) 규정은 그간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의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SH공사에게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를 위탁할 때에도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2년 주기의 재계약 체결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함께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음.<sup>10)</sup>

○ 다만,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sup>11)</sup>(붙임 1 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 대행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가 체결한 대행사무의 위탁계약 전체 현황(붙임 2 참고)을 살펴본 결과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1조(관리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10) 이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2년)은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되었던 2012년(서울특별시조례 제5391호, 2012.12.31., 제정·시행,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부터 존재해온 규정으로, 그간 서울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실적 및 기관운영, 예산집행내역 등을 감독하고, 2년 단위로 민간위탁 재계약 실시여부를 결정해 왔음.

11)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부터 제5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서로 다르게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계약기간과 대행사무 위탁의 계약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SH공사가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실행기관으로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를 수탁한 이후, 주거복지사업 추진실적 증가(붙임 3 참고)와 함께 안정적 주거복지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SH공사가 서울시 전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직영할 계획임을 감안할 때, 기존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서울시와 SH공사가 대행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위탁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전문위원	강대만	02-2180-8204
입법조사관	한승윤	02-2180-8207

[붙임1] 관계법령 및 조례(p.6)

[붙임2] SH공사 대행사무 위탁계약 현황(p.12)

[붙임3]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p.13)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이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2. 주거복지사업

###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2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의 경비 중 영 제63조제2항제4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붙임2

## SH공사 대행사무 위탁계약 현황 (자료 : SH공사 내부자료)

연번	사업명	위탁기관	수수료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계약 단위
1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 (주택 공급, 관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호당 217,454원	1996.09. ~ (계속)	60,239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
2	재건축임대주택 위·수탁 사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호당 217,454원	1996.09. ~ (계속)	7,918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
3	장기안심주택 공급관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집행금의 1.0%	2012.02. ~2024.12.	547,807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대상자 선정 등 공급 및 관리업무	5년 (동일기간 자동연장)
4	두레주택 위·수탁 관리 사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호당 217,454원	2013.09. ~ (계속)	41	서울시에서 공급한 두레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급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	-
5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위·수탁 관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호당 217,454원	2020.01. ~2023.12. (자동 연장)	2,777	서울시에서 공급한 기숙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급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	-
6	삼양동 청년주택 위·수탁관리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호당 217,454원	2020.09. ~ (계속)	11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청년주택의 효율적 관리	-
7	역세권 청년주택 위·수탁 관리 (주택 공급, 관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호당 217,454원	2020.10. ~2023.10. (자동 연장)	1,385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의 효율적인 공급 및 관리	-
8	마포공공기숙사 관리 위탁 대행사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호당 217,454원	2021.02. ~2024.02.	120	마포공공기숙사의 효율적 관리	3년 (자동연장)
9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집행금의 1.0%	2017.06. ~2026.06.	3,600	사회복지기금 임대보증금 융자	3년 (3년마다 협의갱신)
10	서울시 거주 1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위·수탁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사업비의 2.0%	2022.04. ~2025.03.	498	서울시 거주 1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2년 (최근 1년 협약연장)
11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집행금의 1.0%	2023.03. ~2025.02.	3,60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지원	2년
1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 추진반	사업비의 5.0%	2015.10. ~2024.12.	1,716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입찰참여, 수주 및 수행 등	2년 (2년마다 협의갱신)
13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위·수탁 사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사업비의 4.5%	2019.12. ~ (계속)	643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시행	-
1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계약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매각금의 1.7%	2021.07. ~2024.12.	1,456	위탁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	3년 6개월 (적격심사 후 1년 연장가능)
15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위·수탁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사업비의 2.0%	2024.04. ~2026.03.	15,967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2년 (2년마다 협의갱신)
16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종합지 원센터 사무 위·수탁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협의중	2024.01. ~2024.12.	552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등	1년 (동일기간 자동연장)
17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운영 사무 위·수탁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사업비의 2.0%	2023.01. ~2024.12.	605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2년

**붙임3**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 2020~ 2023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거복지 상담(건)	74,900	112,951	137,859	212,73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가구)	2,836	2,990	3,001	4,969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건)	-	1,094	2,239	3,144

■ 주거복지센터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센터	2020		2021		2022		2023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합계	8,259,048	8,027,240	11,061,302	10,373,324	11,430,957	9,347,926	10,527,633	9,903,219
중앙	1,215,366	1,058,826	1,308,494	1,182,974	1,118,931	919,302	1,546,651	1,354,137
지역 (25개소)	3,521,841	3,484,207	4,876,404	4,595,175	5,156,013	4,214,312	4,490,491	4,274,541